

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2. 1. .

특 허 청
(디자인심사정 책과)

법 제 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등록료 미납부로 인한 권리소멸 시 그 회복요건을 ‘책임질 수 없는 사유’에서 ‘정당한 사유’로 완화하는 디자인보호법(법률 제18500호, 2021. 10. 19. 공포, 2022. 4. 20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디자인등록출원·디자인권의 회복요건 변경사항 반영(안 제64조)

‘책임질 수 없는 사유’로 기재된 조문을 ‘정당한 사유’로 변경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 등에 대한 구제 범위를 확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2. ~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제 호

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 중 “책임질 수 없는”을 “정당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4조(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) ① (생 략)	제64조(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) ① (현행과 같음)
1.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 인권자가 <u>책임질 수 없는</u> 사 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 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하는 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 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 통	1. ----- ----- <u>정당한</u> ----- ----- ----- 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